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23

발의연월일: 2021. 7. 21.

발 의 자:천준호·김정호·박상혁

양향자 · 김교흥 · 최인호

신영대 · 소병철 · 진성준

고민정 • 양이원영 • 박찬대

김주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부근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의 범위를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10미터"를 각각 "20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6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	
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	
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	1
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	<u>2</u>
<u>0미터</u> 이내의 구역(일반 공	0미터
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	
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	2
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	
터 <u>10미터</u> 이내의 구역(일반	<u>20미터</u>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	
공된 구역을 말한다)	

<u><신 설></u>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
	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
	된 구역을 말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